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114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5.7.)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 112,042.7 m^2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양보열)(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77-13, 2층(당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50, 안성빌딩 4층(변경)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변경없음)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19.10.10. (최초:2017.1.2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변경내용 참조)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변경없음

자.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변경없음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 변경없음

차. 기타 관계도서 : 생략(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

1. 변경항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당 초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77-13, 2층
- 변 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50, 안성빌딩 4층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추가)

- 추가사항

[별지 제21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추가)

구분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		이 용 상 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 용	1982 (추가)	대조동 89-317	대	1.00	1.00	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김봉만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6-42	-	-	-	-	-	-	-	누락필지 (소재불명)	

- 추가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한 지적도면 등록사항(경계누락) 정정으로 누락 필지 추가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19 - 128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구본청(일반직 15명 증원, 일반직 15명 감원)

- 5급(증 1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 1명
(감 1명) : 행정 5급 △1명
- 6급(증 3명) : 행정 또는 세무 6급 2명, 사무운영(워드) 1명
(감 1명) : 기계운영 6급 △1명
- 7급(증 5명) : 행정 7급 5명
(감 2명) : 시설관리 7급 △2명
- 8급(증 6명) : 사회복지 8급 4명, 시설관리 8급 2명
- 9급(감 11명) : 행정 9급 △4명, 행정 또는 세무 9급 △2명,
사회복지 9급 △4명, 시설관리 9급 △1명

○ 동(일반직 23명 증원, 일반직 23명 감원)

- 7급(증 5명) : 행정 7급 5명
- 8급(증 18명) : 사회복지 8급 18명
- 9급(감 23명) : 행정9급 △2명, 사회복지 9급 △18명,
시설관리 9급 △3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02-351-6174, FAX 02-351-5621 또는 E-mail : kiymin@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19. 10. .
제 출 자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구분청(일반직 15명 증원, 일반직 15명 감원)

- 5급(증 1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 1명
(감 1명) : 행정 5급 △1명
- 6급(증 3명) : 행정 또는 세무 6급 2명, 사무운영(워드) 1명
(감 1명) : 기계운영 6급 △1명
- 7급(증 5명) : 행정 7급 5명
(감 2명) : 시설관리 7급 △2명
- 8급(증 6명) : 사회복지 8급 4명, 시설관리 8급 2명
- 9급(감 11명) : 행정9급 △4명, 행정 또는 세무 9급 △2명,
사회복지 9급 △4명, 시설관리 9급 △1명

○ 동(일반직 23명 증원, 일반직 23명 감원)

- 7급(증 5명) : 행정 7급 5명
- 8급(증 18명) : 사회복지 8급 18명
- 9급(감 23명) : 행정9급 △2명, 사회복지 9급 △18명,
시설관리 9급 △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인건비 반영

※ 향후 인건비 상승률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9. 10. 16. ~ 11. 05. 【20일간】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2019. 10월 중
- 5)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외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구분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 계	1,423	878	27	106	412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414	872	24	106	41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0
행정	5	4	1		
행정 또는 기술	2	2			
기술	1			1	
5급 소계	63	34	1	12	16
행정	42	25	1	1	15
행정 또는 사회복지	3	2			1
녹지	1	1			
행정 또는 보건	2	1		1	
의무	8			8	
의무 또는 약무	1			1	
의무 · 간호 ·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시설	4	4			
행정 또는 시설	1	1			
6급 소계	259	182	3	19	55
행정	163	106	3	7	47
행정 또는 세무	16	16			
행정 또는 사회복지	19	11			8
행정·전산 또는 방송통신	3	3			
행정 또는 농업	1	1			
행정 또는 시설	7	7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2	2			
방호	1	1			
공업	4	4			

행정 또는 공업	2	2			
행정 또는 녹지	5	5			
행정·보건 또는 수의	1	1			
행정·보건 또는 간호	1			1	
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행정 또는 의료기술	1			1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1			1	
간호	4			4	
간호 또는 보건	1			1	
보건진료	2			2	
공업·환경 또는 보건	1	1			
시설	15	15			
방송통신	1	1			
운전	4	4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7급 소계	414	275	8	30	101
행정	231	145	6	7	73
행정 또는 세무	29	29			
전산	3	3			
사회복지	42	14			28
숙기	1		1		
방호	4	3		1	
공업	11	11			
녹지	5	5			
수의	2	2			
보건	5	1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3			3	
약무	3			3	
간호	7			7	
환경	2	2			
시설	29	29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위생	1	1			
시설관리	1	1			
운전	15	12		3	
전기운영	4	4			
기계운영	4	4			
사무운영	9	6	1	2	
8급 소계	423	239	7	33	144
행정	155	99	5	3	48
행정 또는 세무	26	26			
전산	4	4			
사회복지	112	27			85
숙기	2		2		
방호	3	3			
공업	10	10			
농업	1	1			
녹지	4	4			
보건	5			5	
의료기술	8			8	
간호	26	1		17	8
시설	36	36			
방재안전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6	3			3
운전	22	22			
전기운영					
기계운영					
사무운영					
9급 소계	244	133	4	11	96
행정	84	54		2	28
행정 또는 세무	6	6			
전산	1	1			
사회복지	57	9			48
숙기	1		1		
방호	10	7	2		1
공업	6	6			
녹지	4	4			

보건	3			3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3			3	
환경	1	1			
시설	29	29			
방재안전					
방송통신	4	4			
위생					
시설관리					
운전	30	11	1	2	16
사무운영	4	1			3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1	1			
화생방	1	1			
다군	1	1			
촬영요원	1	1			
별정직 계	8	5	3		
5급상당 소계	2	1	1		
전문위원	1		1		
비서	1	1			
6급상당 소계	3	2	1		
전문위원	1		1		
비서	2	2			
7급상당 소계	2	2			
비서	2	2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구분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23	878	27	106	412	총 계	1,423	878	27	106	412
정무직 계		(생략)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414	872	24	106	412	일반직 계	1,414	872	24	106	412
3급 소계		(생략)				3급 소계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생략)				4급 소계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63	34	1	12	16	5급 소계	(현행과 같음)				
행정	43	26	1	1	15	행정	42	25	1	1	15
행정 또는 사회복지	2	1			1	행정 또는 사회복지	3	2			1
(생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257	180	3	19	55	6급 소계	259	182	3	19	55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 또는 세무	14	14				행정 또는 세무	16	16			
(생략)						(생략)					
기계운영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사무운영	1	1			
7급 소계	406	272	8	30	96	7급 소계	414	275	8	30	101
행정	221	140	6	7	68	행정	231	145	6	7	73
(생략)						(생략)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1	1			
(생략)						(생략)					
8급 소계	399	233	7	33	126	8급 소계	423	239	7	33	144
(생략)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90	23			67	사회복지	112	27			85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4	1			3	시설관리	6	3			3
(생략)						(현행과 같음)					
9급 소계	278	144	4	11	119	9급 소계	244	133	4	11	96
행정	90	58		2	30	행정	84	54		2	28
행정 또는 세무	8	8				행정 또는 세무	6	6			
(생략)						(생략)					
사회복지	79	13			66	사회복지	57	9			48
(생략)						(생략)					
시설관리	4	1			3	시설관리					
(생략)						(생략)					
전문경력관 소계		(생략)				전문경력관 소계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생략)				별정직 계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서 일부 정원 조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은평구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	450,264	462,870	475,830	489,150	502,850	2,380,964
	소계(b)						
□ 총 비용(a-b)		450,264	462,870	475,830	489,150	502,850	2,380,964

※ 매년 인건비 상승률 2.8%(‘20년 기준)를 예측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향후 인건비 상승률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450,264	462,870	475,830	489,150	502,850	2,380,964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50,264	462,870	475,830	489,150	502,850	2,380,964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은평구 행정지원과 민기영 (☎ 351-6174)

Ⅱ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없음

2. 비용소요 추계 : 450,26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450,264	○ 6급(증 2명) : $74,016 \times 2\text{명} = 148,032$ ○ 7급(증 8명) : $58,596 \times 8\text{명} = 468,768$ ○ 8급(증24명) : $41,120 \times 24\text{명} = 986,880$ ○ 9급(감 34명) : $33,924 \times 34\text{명} = \Delta 1,153,416$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2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사무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획예산과 위원회 정비안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자치 법규 규정의 표현방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정비안을 반영하여 위원장 선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1)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

나.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연임규정 제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다. 은평구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필수규정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

1) 위원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추가

2)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추가

라.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을 “기념품”에서 “격려금”으로 변경함 (안 제2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85,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kiwiwi@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규칙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행 정 안 전 국 장

1. 제안이유

제안 사무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획예산과 위원회 정비안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선출 사항을 추가하고 자치법규 규정의 표현방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6조)

- 위원장 선출 사항 추가
-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연임규정 제한 사항 추가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

나. 부상금의 지급(안 제25조)

-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조항 수정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기획팀과 합의하였음.(안 제16조 ~ 제16조의4 관련)

라. 기 타

- (1) 부패영향평가 : 2019. 10월 중
- (2) 성별영향평가 : 2019. 10월 중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입법예고 : 2019. 10. 16.(수) ~ 11. 5.(화), 20일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1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불임2

작성자 : 기획예산과 자치분권혁신팀 조혜은 (전화 6285)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에 관하여는”을 “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은평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6명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정부표창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규정」 등이”를 “· 「정부 표창 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 「공무원제안규정」 ”을 “ 「공무원 제안 규정」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안에서 기념품을”을 “에서 격려금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조제3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은평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은평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구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구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	조례에서 -----
제16조(구성) ① (생략)	제16조(구성) ① (생략)	제1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	-----	-----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 조
례 개정 2017. 4. 27.)

1. 은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명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
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
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이 된다.

<삭 제>

<삭 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은평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6
명

2.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
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명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

두 차례만 연임--.

<신 설>제16조의 2(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제16조의 3(위원의 해촉)

-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

<신 설>

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
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 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
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9조(회의록) ① (생 략)

제19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등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인사상 특전) ① (생략)

② 제14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추천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부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 -----
----- 서명 또는 날인-----
--.

제22조(제안의 등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정부 표창 규정」 ·
「지방공무원법」 ·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인사상 특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제안 규정」-----

-----.

제25조(부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에서
격려금을 -----.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

----- 제31조제1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25조제2항에서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5조제2항의 격려금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됨
 격려금 비용 : 5만원×5명(등급외 최대 제안자 수)×2회=500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기획예산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조혜은
- 연 락 처 : 351-6285